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59

발의연월일: 2021. 1. 29.

발 의 자:정점식·이종성·최형두

하영제 · 정운천 · 이명수

한무경 • 권명호 • 권성동

서일준 · 김성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 면허를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촌계 등이 개인에게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어촌계 외의 개인에게 이전이나 분할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년 창업어업인 및 귀어어업인의 어촌정착 시 신규 양식업권 취득을 통한 양식장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등 양식업권의 이전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를 제외하고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개인에게도 이전·분할이가능토록 함으로써 양식업권의 활용을 통한 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법률 제 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허"를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어업면허"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분할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② (생 략)	또는 변경)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3
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내수	
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u>면허</u> 는 어촌계, 내수면어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협동양식업면허 및 「내수면어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업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	<u>공동어업면허</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전·분할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